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23년 10월

【공시내용】 : 2023년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3. 4. 1., 단, 사이버대학은 2023. 3. 1. 기준)

기준연도	기준면적(㎡)		건축물 전체 보유면적(㎡)				교사시설확보율(%)		
			교사확보율 산정 면적			그 외			
	입학정원 기준(A)	재학생 기준(B)	기본시설(C)	지원시설(D)	연구시설(E)	부속시설	기타시설	입학정원기준(C+D+E)/A×100	재학생기준(C+D+E)/B×100

■ 작성지침

【기준면적】 : 「대학설립·운영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사 기준 면적

○ 관련법규 참조

- 「대학설립·운영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3]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별표 1]
-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3]

【입학정원기준】 : 정원내 학부(계열별 학과 주·야별 입학정원 중 최댓값 × 수업연한(2년, 3년, 4년, 5년 이상)) + 정원내 대학원(주간 입학정원 × 수업연한)

※ 계열 구분이 어려운 학과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과에 입학한 총 정원을 계열이 최초로 구분되는 학년의 정원 내 재학생 비율로 안분(소수점은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사이버대학 시설정원 입력 시 유의사항

- 당해연도 교육부에서 허가받은 입학정원(수업연한 곱하지 않음)
- 대학원이 설치된 사이버대학은 대학원 입학정원의 1.5배수

<대학, 전문대학>

※ 학생정원 산정 시, ‘결손인원’ 또는 ‘편입학여석’ 활용을 통한 ‘첨단학과 증원 인원’(총 정원범위 내 자체조정, 또는 국립대 증원을 통한 첨단학과 정원 증원분은 입학정원에 포함)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 제외해야 하는 첨단학과 결손인원/편입학여석 활용분

- 결손인원 활용 방식: 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위해 활용한 결손인원에서 타 학과 누적 감축정원을 뺀 값
- 편입학 여석 활용 방식: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증원한 첨단학과 정원
- * 결손인원 활용과 편입학 여석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결손인원 활용분과 편입학 여석 활용분을 합산

<대학원>

- * 학생정원 산정 시, '결손인원' 활용을 통한 '첨단학과 증원 인원'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 * 제외해야 하는 첨단학과 결손인원
 - 타 학과 정원 감축형: 첨단학과 정원에서 타 학과 누적 감축정원을 뺀 값(즉, 미감축 정원)
 - 타 학과 정원 유지형: 첨단학과 정원
- * 타 학과 정원 감축형과 유지형이 혼재하는 경우, 각각의 활용분을 합산

참고

- 2005. 10. 25 이전 설립 대학 중 본교·분교 및 캠퍼스 상관없이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100명)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4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 2005. 10. 25 이후 설립 대학 중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000명(대학원대학 200명)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1,000명(대학원대학 2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단, 대학의 일부를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는 경우,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200명)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2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재학생기준】 : 정원내·외(계열별, 학년별, 주·야별 최댓값) + 정원내·외 대학원(주간 재학생)

- * 제외: 계약학과 재학생,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
- * 「고등교육법」 제23조5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재학생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대학 및 전문대학(각종학교, 기술학교포함)의 교사기준면적

(단위: ㎡)

구분 \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12	17	20	19	20

-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간호학과 4년제 지정을 받은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 학생정원만큼은 4년제 대학의 기준을 적용함)



○ 사이버대학의 교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별표 1]에 의한 사이버대학의 교사

구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교사 범위	대학 본부 및 행정실, 교수 연구실, 강의실, PC실습실, 세미나실, 콘텐츠 개발실	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 시스템 운영실, 디지털 도서관
기준면적	○ 입학정원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 - 1,000명 미만: 990㎡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1,485㎡ - 2,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1,980㎡ - 3,000명 이상: 2,475㎡	

- ※ 1. 기준면적은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 2. 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은 위 기준면적의 7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유면적】

○ 대학 및 전문대학 보유면적: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에 의한 교사시설

1.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교지경계선 내 교사
2. 교지경계선 “20km 이내 이거나 동일 시·군·구 내의 학생 기숙사”는 해당 부지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학생기숙사로 이용하면서, 학교 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는 교사시설로 인정하고, 교지경계선 “20km밖 이거나 타 시·군·구의 학생기숙사”는 해당 부지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학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교사시설로 인정
3. 교지경계선 밖 “연구시설”로서 해당 부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교사시설로 인정
 -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2] 교사시설 구분

교사시설	구분		
교육기본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체육관(체육관으로 병용되는 형태의 강당을 포함한다)·대학본부·정보전산원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지원시설	강당·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간,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농학계열	농학에 관한 학과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축산학에 관한 학과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임학에 관한 학과	학술림·임산가공장
	공학계열	공학에 관한 학과	공장
항공학에 관한 학과		항공기·격납고	

교사시설		구분	
수산·해양계열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		실습선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수산기공장
	증식학에 관한 학과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기관학에 관한 학과		기관공장
약학계열	약학에 관한 학과		약초원·실습약국
	제약학에 관한 학과		제약실습공장
의학계열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		부속병원
	수의학과		동물병원

비고: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사이버대학 보유면적

1. 사이버대학설립인가 받은 위치의 교사(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2. 사이버대학이 인가받은 위치 외에 “학습관”으로 인가된 경우 교사시설로 인정(단, “학습관”이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을 건물에 한함)

【교사(校舍)시설 확보율(%)】

- 대학 및 전문대학 교사(校舍)시설확보율(%): [(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기준면적] × 100
- 사이버대학 교사(校舍)시설확보율(%): [(기본시설+지원시설)/기준면적] × 100

■ 참고사항

-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